

제 2022-BO-0372-1 호



안 전 인 증 서

JUMO GmbH & Co. KG

Moritz-Juchheim-Strasse 1 36039 Fulda Germany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(안전인증) 및 시행규칙 제110조(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) 제4항(인증서 교부)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방폭구조 전기기계·기구(JUMO exTHERM-AT)

형식·모델/용량·등급/인증번호

형식·모델

exTHERM-AT-605055

인 증 번 호

22-AV4BO-0372X

용량·등급

Ex db eb IIC T4/5/6 Gb

정 격

Max AC 25 A, Max 440 Va.c / 230 Vd.c
-60°C ≤ Tamb ≤ +70°C 의 범위에서 결정
온도설정범위 : -20°C ~ 500°C

※ 상세 정격, 온도등급과 온도설정범위는 구분코드에 따라 상이하며 인증서 뒷면 기재

인 증 기 준

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22호)

인 증 조 건

- 상기 주소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며 온도등급에 따른 스위치 전류값은 인증서 뒷면 참조.
- 온도설정범위(구분코드)에 관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조할 것.
-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방폭구조표기 : Ex d e IIC T4/5/6
- 안전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
 - 최초교부 : 2022.09.29.
 - 변경신고 : 2022.12.14. (동일형식에 관한 사항 변경)

2022년 12월 14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이



제 2022-BO-0372-1 호



인 증 조 건

1. 제조공장 : 'JUMO GmbH & Co. KG', Moritz-Juchheim-Strabe 1 36039 Fulda Germany에서,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
2. 제품개요 : exTHERM-AT는 히터 등의 온도를 모니터링 및 설정온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히터 외부에 부착되는 기기로 안전증방폭구조 외함 내부에 내압방폭구조 온도조절 부품으로 구성됨
3. 인증범위 : 온도등급에 따른 최대 스위칭 전류는 아래와 같음

최고 주위온도	최대 스위칭 전류	온도등급	Switching capacity:	AC 400 V +10%, 16 A
50℃	25 A	T5		AC 230 V +10%, 16 (2.5) A, cos φ= 1 (0.6)
80℃	16 A	T5		AC 230 V +10%, 25 (4) A, cos φ= 1 (0.6)
50℃	16 A	T6	Housing : 폴리에스터 외함(검정 기본형), 스테인레스외함 Control range(TW해당) : 제조자 상세서류 참조 Limit value range(STB해당) : 제조자 상세서류 참조	
40℃	25 A	T6		
55℃	25 A	T4		

세부분류코드	제품상세
0002	Temperature monitor (TW)
0020	Safety temperature monitor (STW)
0070	Safety temperature limiter (STB)
0202	Temperature monitor / temperature monitor (TW/TW)
0207	Temperature monitor / temperature limiter (TW/TB)
0220	Temperature monitor/Safety temperature monitor (TW/STW)
0270	Temperature monitor/Safety temperature limiter (TW/STB)
2020	Safety temperature monitor/Safety temperature monitor (STW/STW)
2070	Safety temperature monitor/Safety temperature limiter (STW/STB)
7070	Safety temperature limiter/Safety temperature limiter (STB/STB)

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
 - exTHERM-AT의 설정온도는 완제품 히터의 온도등급 범위 이내에서만 사용하고, 현장 사용자 임의 조작을 금함
 - 확인심사 수검 및 Routine Test 등 제조자의 의무 준수

5. 안전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
 - 인증서 앞면 좌측 하단에 기재